



# 西獨 改正登錄 意匠法(2)

## 디자인登錄對象 및 出願書類等

### I. 登錄디자인으로 保護받을 수 있는 것

종전과 같이 다음의 條件이 充足되는 경우에는 登錄디자인으로 保護 받을 수 있다.

#### 1. 登錄對象

등록디자인보호의 對象은 시각에 의해 감지되는 대표의 형태에 대한 사람의 美感을 자극할 목적으로 또 그것을 자극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2차원 혹은 3차원의 상업적 고형물품의 색채와 型(모델)의 외관이며 再現性이 있어야 한다.

타이프페이스에 대한 디자인保護는 타이프페이스法의 條件에 따라 주어진다.

#### 2. 新規性

디자인(평면형)이나 型(3차원의 對象)이 등록을 받으려면 출원당시에 新規해야 한다.

즉 보호를 요구하는 물건의 외관이 출원당시에 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者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러한 자가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알아내리라고 합리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3. 獨創性

디자인 혹은 型은 색채의 그 創作性에 있어서 특히 통상의 기술자의 디자인에서 알려진 기술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한다.

### 4. 상업상 有用性

상업적으로 유용한 경우, 즉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型에 대해서만 保護가 되어진다.

### 5. 심사범위

1988년 7월 1일부터는 의장등록부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특허청부서만이 등록조건으로서 출원의 공식요건들이 충족되는가를 심사한다. 그러나 출원의 대상인 디자인이나 型이 실제로 1~4항의 실제적 등록요건들을 충족시키는가는 심사하지 않는다.

### II. 독일특허청에 유효한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하여 제출해야할 사항

#### 1. 등록청구

##### 記載事項

-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
-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
- 디자인출원 대등의 설명이나 명칭
- 회사 혹은 사업체 등록번호
- 물품분류 디자인이나 型이 他物品分類上의 物品에까지 미치거나 그러한 물품에 옮겨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추가해야 함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유익하다.
- 예를들어 벽지무늬, 직물무늬 같은 경우처럼 출원된 물품의 외관이 원래의 평면 견본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또 이대로 출원해야 할 경우 출원된 물품의 표면외관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
- 의장이 3차원(입체)형태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래의 표면 외관에 특히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型의 3次元형태(입체모양)뿐

- 만 아니라 그 표면구성에 대해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
- 원모형의 기탁에 의해서만 충분한 보호가 보장되는지 여부(정당함을 밝혀야 하는 하나의 예외이다)
- **Geschmacksmusterblatt** (디자인공보)에 게재를 위해 사용할 표현이 어느 것인지
- 출원인이 디자인이나 썸의 라이선스 허락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(이 선언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)

**請求事項**

- 우선권(외국우선권 또는 전시우선권)
- 기타事項(가능한 경우)**
- 한개 이상의 디자인이나 썸의 경우에 연합출원으로서의 등록(최대 50개의 디자인이나 썸까지 연합출원이 가능함)
  - 디자인공보에 디자인이나 썸의 표현 공개를 지연(최고 출원일자로부터 18개월)
  - 디자인공보에 색채로 그 표현을 공개
  - 디자인이나 썸의 설명을 공개(의무적인 것은 아님)

**2. 디자인이나 썸의 표현**

등록디자인법에 따라 보호를 요구하는 디자인이나 썸의 형상이 명백하고 완전하게 開示되어야 한다. 디자인이나 썸의 표현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. 이들 조건을 구비한 디자인이나 썸을 표현한 것이 출원일에 出願書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. 후에 보정서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.

a)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나 썸은 사진이나 기타 도면으로 例示한다.

(예 : 선도면)

- 물품의 표현에는 통일성에 반하는 추가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.
- 디자인이나 썸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여러개의 例示로도 表現할 수 있다(각 3매씩)
- 디자인이나 썸의 세부사항에 대한 補完例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.
- 물품의 표현은 색채 또는 흑백 공히 가능

- 物品을 재현한 것 위에 또는 인접한 곳에 직접적으로 설명이나 칫수를 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물품의 표현은 4×4cm보다 적어야 한다.
- 도면이나 사진은 **DIN A4(21×29.7cm)**보다 커서는 안된다.

b) 어떤물품의 표면외관에만 디자인 등록법상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진 혹은 기타 도면의 例示 대신에 그 물품자체의 평면샘플 혹은 그 일부분만으로 디자인이나 썸을 표현할 수 있다. 이들을 예를 들면 옷감, 피륙, 벽지, 평면의 세라믹 혹은 금속의 물품들이다.

이와 같은 평면샘플은 다음의 要件들을 충족시켜야 한다.

- 각 디자인 또는 그 일부에 대해 평면 샘플에 의한 표현은 하나만
- 50×100×2.5cm 혹은 75×100×1.5cm보다 크지 않을 것
- **DIN A4(21×29.7cm)**로 접을 수 있을 것
- 포장을 포함해서 총 중량이 1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

c) 출원인이 썸 또는 그 자체의 사진이나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 또는 그 모형 자체를 가지고 보호를 청구하는 특성을 명백하고도 완벽하게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은 모델 그 자체를 표현으로 인정한다.

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

- 썸의 사진 혹은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의 세출(3부)
- 썸의 크기는 50×40×40cm이내, 포장포함 총 중량이 10kg이내일 것
- 왜 사진이나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이 공개로서 부적합한가에 대한 서면이유서

d) 타이프페이스의 例示 및 그 타이프페이스로 제작한 3線책에 관해서는 사진 혹은 기타 도면에 의한 표현에 관한 위 언급사항이 적용된다.

e)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다. 단, 100단어를 초과 하여서는 안되며 연합출원의 경우에는 200단어를 초과하지 못한다. <계속>